7-2-3 현장실습 안전관리 지침

<구. 임상실습 안전관리 규정 - 개정 2017.3.1>

제1조(실습 전 건강검진 의무) 현장실습 시작 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.

1. 실습학생은 실습현장 내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고,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.<신설 2017.3.1.><개정 2023.2.6.>
2. 학교는 학생과 실습기관의 안전을 위해 실습 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. 학생은 현장실습 전 흉곽 촬영, 결핵(Tuberculosis, Tb), 법정감염병(MMR, 수두, A/B형 간염 검사) 및 기타 계절 독감 예방접종 등 실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진단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한다.<개정 2017.3.1., 2023.2.6.>
3. 실습생의 건강정보는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.
4. 의료법 제 8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 진단받은 자는 교수회의를 통해 현장실습이 제한될 수 있다.<신설 2017.3.1.>

제2조(사고발생 보고 및 대처) 실습 중 사고, 상해 혹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담당교수는 비상연락망체계(별첨1, 별첨2)를 활용하여 신속히 보고하고, 학생안전사고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<개정 2017.3.1., 2023.2.6., 2024.10.7>

제3조(진단 및 치료 의뢰) 만일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담당교수는 예수병원 가정의학과에 의뢰하여 학생의 건강회복을 위해 치료에 임하도록 돕는다.

제4조(보험처리 조치) 대학본부 캠퍼스보험 처리 담당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보험회사와 논의하고 결과를 간호학부장에게 보고하여 학생이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제5조(후속 조치) 간호학부장은 필요시 실습일수 보충 및 기관의 사고배상에 대해 실습기관 및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.

제6조(실습 전 안전관리 교육) 현장실습 시작 전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시행한다.<신설 2023.2.6.>

1. 실습관련 인권 교육
2.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

부 칙

이 지침은 200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 1) <개정 2023.2.6.>

교내 안전관리 비상 연락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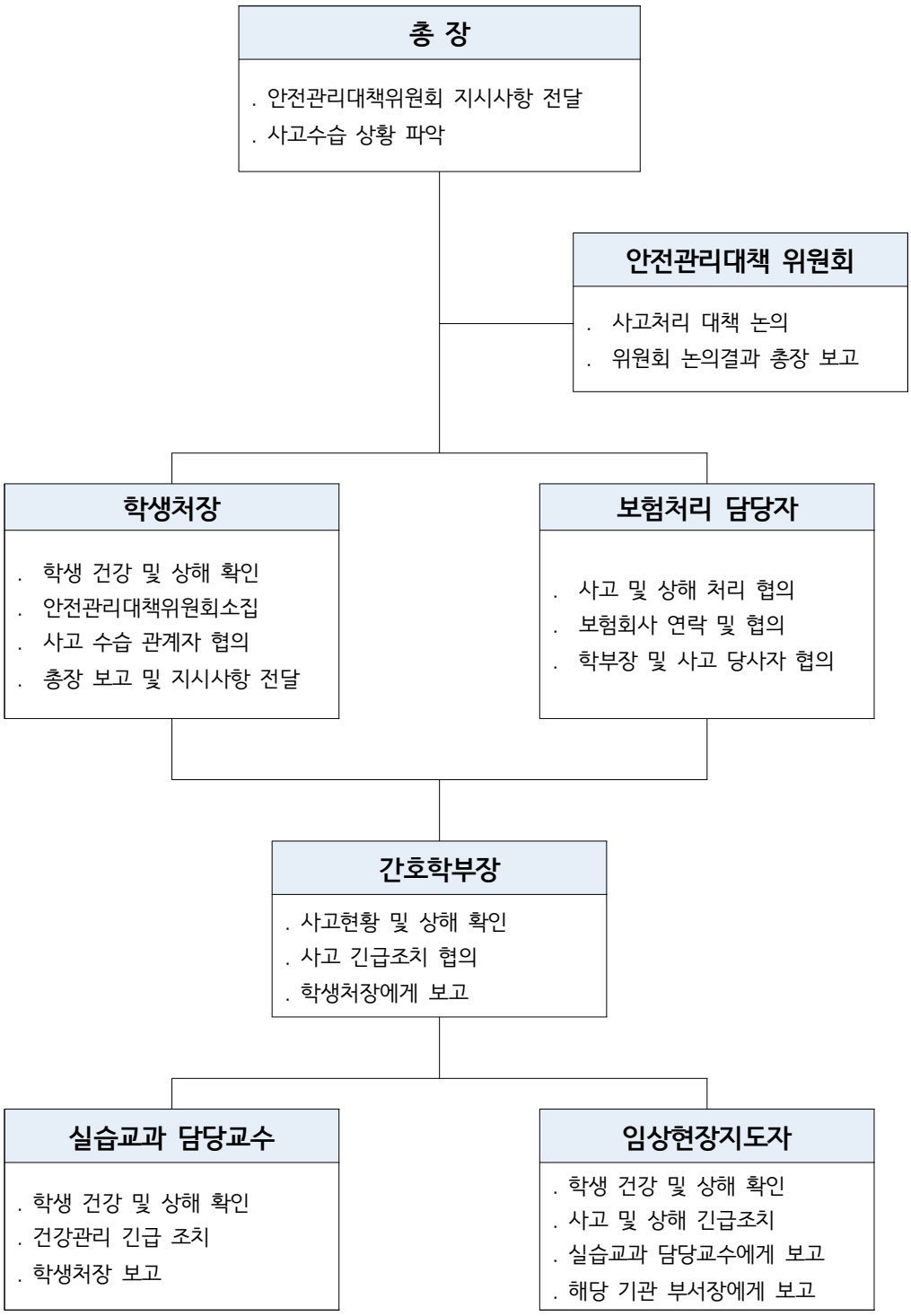

(별첨 2)

교내.외 비상 연락처

■ 교내 긴급연락처

구분	부서	전화번호	참고 사항
화재 사고 및 응급시	간호학부	230-7764	주간
	보건진료 담당	230-7767	주간
시설물 고장시	사무처 시설담당	230-7732	주간
기타 상황 발생시	경비실	230-7799	주,야간

■ 교외 긴급연락처

구분	부서	전화번호	참고 사항
119 구급대	응급 출동팀	국번없이 119 274-0119 (전주 덕진 소방서)	주,야간
1339 응급처치	응급처치 상담	국번없이 1339	주,야간
예수병원	응급의료센터	230-8280 230-8281	주,야간
전북대학교병원	응급센터	250-2222	주,야간